

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○ 제출 사유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2023년 기금운용계획 승인 이후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
### ○ 주요 내용

- 당초 승인된 운용계획 대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, 수입계획 증가(국고보조금 27,000천 원 및 예치금 회수 22,335천 원)의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.

#### [참고] 주요 변경내역

(단위: 천 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 목	변경	당초	증감	항 목	변경	당초	증감
합 계	115,511	66,176	49,335	합 계	115,511	66,176	49,335
보 조 금	27,000	-	27,000	비용자성 사 업 비	27,000	-	27,000
예 치 금 회 수	71,311	48,976	22,335				
이자수입	600	600	-	예 치 금	88,511	66,176	22,335
기타수입	16,600	16,600	-				

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,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 됨.

##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7. 토 론 : 없음.

## 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